#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3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정준호·복기왕·박희승

이춘석 • 이학영 • 박용갑

임호선 · 이연희 · 박해철

부승찬 · 염태영 · 윤호중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 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 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경영 지침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임원추천에 있어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등이 추천되고,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 서류를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 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임원후보자 지 원서류의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함으로써 임원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 제7항 및 제57조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추천하여야"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관장은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제출된 지원 서류(이하 이항에서 "지원서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따라 지원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과태료) ① 제32조제7항에 따른 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기 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후보자 지원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지원서류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 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 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 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를 수행하여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 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 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⑥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⑥ (생 략) (혂행과 같음) <신 설> ⑦ 기관장은 임원후보자 추천 을 위하여 제출된 지원 서류 (이하 이 항에서 "지원서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 <신 설>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과태료) ① 제32조제7항에 따른 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기관장에게는 3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주무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